

[기업법무] 이사보수의 일방적 감액 주총결의 무효: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

21643 판결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주총결의는 무효입니다.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문은 유한회사 사안이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
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
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